**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 지침**

**2022.04.01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주)두올(이하 “당사”라고 함)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

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

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가. 본 조는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

(갱신 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정 절차 : 거래 신청, 사전 심사, 현장실사, 유관부서 검토, 심의 및 결정

나) 거래 신청 : 협력업체는 당사의 대표번호, 기타 등의 수단을 통해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전 심사 : 당사의 해당부서에서 1차 사전 심사를 하며, 심사의 상세한 내역은 당사의

제반 여건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라) 현장 실사 : 당사의 해당부서는 2차로 협력업체의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실사의 상세한 내역은 당사의 제반 여건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마) 유관부서 검토 : 당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 지침」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회 대표 1인 등에 의한 검토, 기타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에 검토가 필요한 유관부서의 검토를 통해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바) 심의 및 결정 : 각 항목의 절차를 심의 후, 해당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경영진이 최종 승인을 한다.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 공정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1)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해 설정할 수 있다.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가) 당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라)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마)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른 거래 위험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 - 바) 회사의 재정적 손실 및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사) 안전,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아)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자)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 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차) 업체등록 평가절차에 따라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가)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나)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 하는 경우

다)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

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

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라)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귀책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변경)**

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한다.